

정책연구보고 P70 / 2004. 9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송 미 령 (부연구위원)

박 주 영 (초청연구원)

머 리 말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별로 시행되다 보니 중복성, 비효율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나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체계화 방안 마련이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마침 신활력지역 대책에 따라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이 농촌 지역개발을 위해 추가로 확립된 바, 이의 지원방식 정립과도 관련성이 높은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선 개략적인 수준에서나마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비교 분석 및 종합 평가를 함으로써 농촌 지역개발사업 체계화의 가능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농촌지역의 정주공간 위계에 부응하는 체계, 중앙정부 부처 간 미션과 기능을 고려한 역할 분담 체계에 충실한다는 원칙과 방향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체계화의 대안으로서는 오지면과 정주권면 구분 해제, 마을 단위 사업의 통합 추진, 신활력지역 혁신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의 차별성 확보, 균특회계 사업 재편 등을 제안하였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연구인지라 향후 보다 정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지만, 신활력지역 혁신사업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4.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개발사업 중 군특회계 계정에 속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한 비교와 종합 평가를 함으로써, 체계화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개발사업들은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공간 범위는 마을, 마을권, 읍·면, 읍·면 소재지, 시·군 일부지역 등으로 다양하다. 사업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하게 보이지만 하드웨어 정비사업이 주를 이루고, 대체로 일반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낙후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도농교류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는 특성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들은 농촌 정주공간 위계 및 부처 간 기능과는 무관하게 편의적 공간분할 형식으로 시행되어 사업 내용의 시의성 및 현장 적합성이 미약하다. 더욱이 기존에 낙후 농촌지역 관련 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활력지역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상호 차별성이나 연계성이 모호하다.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농촌지역의 정주공간 위계에 부응하는 사업 체계, 중앙정부 부처 간 미션과 기능을 고려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는 원칙 하에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체계화의 대안으로서는 첫째, 오지면과 정주권면 구분 해제, 둘째, 마을 단위 사업의 통합 추진, 셋째, 신활력지역 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의 차별성 확보, 넷째, 군특회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켜야 할 사업 재편, 끝으로 농촌 계획 및 개발을 총괄하는 통합법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2장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개요	3
제3장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특징과 평가	6
1.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특징	6
2.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13
제4장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17
1. 체계화의 원칙과 방향	17
2. 체계화 방안	18
부록 1. 오지면과 정주권면 구분의 현황 및 타당성	23
부록 2. 군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현황	25
Abstract	60

표 차례

표 1. 군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예산(2004)	4
표 2. 군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개요	5
표 3. 사업의 주요 내용	9
표 4.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11
표 5.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개소당 사업비 배분 사례	12
표 6.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22

그림차례

그림 1. 공간범위에 따른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분포	7
그림 2.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중앙·지방간 추진 체계 예시	13
그림 3.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체계 구상(안)	21

제 1 장

서 론

- 우리나라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여러 부처가 시행하며 유사하게 보이는 사업들이 복잡다기하게 얹혀있어 사업 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여러 부처별로 시행되다 보니 중복성, 비효율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옴.
 - 그러나, 농산어촌의 기초 생활여건 정비에 상당 부분 기여
-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신설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 특징·내용·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농촌 지역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토대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낙후지역의 진흥을 위해 구상되어 2005년부터 본격화될 신활력지역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의 추진 방식도 기존 농촌 지역개발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사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또 하나의 낙후지역 사업을 추가하는 우를 범한다는 비판이 존재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개발사업 중에서도 균특회계 계정에 속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한 비교·분석을 통

하여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농촌 지역개발사업 체계화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군특회계 사업 중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검토
- 사업간 비교·분석과 종합 평가
- 체계화의 방향 및 방안
 - 신활력사업의 추진 방식 및 내용, 평가 등

제 2 장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개요

□ 다양한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 현재 군특회계에 포함된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15개 사업으로서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음.¹⁾
 -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 계획과 비법정 계획
 - 계획 수준에 따라 기본 계획과 사업(실시/물량)계획
 - 사업 대상지역의 공간 범위에 따라 마을, 읍·면, 시·군 사업
 - 사업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주기반 확충, 도농교류, 기타 사업
 - 사업추진 절차 및 사업 성격 등

□ 여러 중앙부처에서 분산 시행

- 비슷한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을 가지고, 여러 부처에서 공간적 범위를 분할한 채 분산 시행함.
 - 농림부는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을 추진

1) 군특회계에 속한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관해서는 <표 2>에서 개요를 요약하고 부록2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 행정자치부는 농어촌 생활환경 중 도로, 주택, 상하수도 정비 등에 치중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읍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도읍육성사업, 면 단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
- 이 밖에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에서는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 포괄하지 않는 면 단위 지역(어촌과 산촌)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정주권개발사업의 일종인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
-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을 추진

□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연간 1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연간 8,000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부터 시행되는 신활력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는 2,000억원 수준임.

<표 1> 군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예산(2004)

구분	총계	농림부	행자부	건교부	문광부	해수부	기타
예산('04)	8,053	2,938	2,658	1,490	531	302	134
대상 사업	15개	농어촌생활환경(정주 기반 확충 및 전원 마을조성), 지역특화사업보조,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접경지역지원, 도서종합개발, 오지종합개발, 소도읍육성	개촉지구지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	산촌종합개발(산림청),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농진청)

<표 2> 군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주관 부처	근거법	출발 연도	사업비 규모 및 보조율	추진 기간	계획수립*	사업대상 범위	주 사업 내용	비고
접경지역 지원	행자부	접경지역지원법 (2000)	2003년	-70% 보조	5년	○	-15개 접경 시·군 98개 읍·면·동	정주기반 확충	
도서종합 개발	"	도서개발촉진법 (1986)	1988년	-2억원 (도서별) -70% 보조	10년	△ (사업물량 계획)	-53개 도서면 (410개 도서)	정주기반 확충	-(선)대상지 지정 -면당 5억원
오지종합 개발	"	오지개발촉진법 (1988)	1990년	-20억원 -70% 보조	2~3년	△ (사업물량 계획)	-399개 오지면	정주기반 확충	-(선)대상지 지정 -마을별 소액 분산 투자
소도읍 육성	"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2001)	1972년	-100억원	4년	◎	-194개 읍(면)	-정주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	제한적 공모방식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삶의질특별법 (2004)	2004년	-70억원	3~5년	◎	-정주권면의 마을 권역(3~5개 법 정리)	-정주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방식
정주기반 확충	"	농어촌정비법	1990년	-30억원 정액지원	3~5년	○	-757개 정주권면	정주기반 확충	마을별 소액 분산 투자
전원마을 조성	"	농어촌정비법	1991년	-30~50억원 (20~30억 원 보조)	2~3년	△ (시설계획)	-정주권면의 중심 마을(면소재지)	택지조성 및 정주기반 확충	신마을조성 및 기존마을재정비형
녹색농촌 체험마을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2002년	-2억원 -50% 보조	1년	○	-마을	-도농교류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방식
지역특화 사업보조	"	농업농촌기본법	1997년	-20억원(기 반시설) -50~70%			-시도, 시·군	소규모농촌기반정비, 특성화품목개발 등 2개 분야 10개 세부사업	시장사업, 공모사업, 포괄보조
산촌종합 개발	산림청	산림기본법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1994년	-14억원 -70% 보조	3~4년	△ (시설계획)	-193개 산촌마을	정주기반 확충	-(선)대상지 지정 -사전설계비 포함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해수부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02년	-5억원 -50% 보조	1년	○	-연안 시·군 60개 의 1개 마을	도농교류사업	-제한적 공모방식 -어촌계 지원 및 자부담 5%
어촌종합 개발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1994년	-35억원 -80% 보조	2~3년	○	-160개 권역 (1,200개 어촌계)	정주기반 확충 및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진청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2002년	-2억원 -50% 보조	2년	○	-(157개) 마을	-도농교류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방식 -추진 과정 독특성 (생활지도사)
개발촉진 지구지원	건교부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1994)	1995년	-500억내외 -100%보조 (도로)	5년 (지구별 차이)	○	-72개 시·군 (2-3개 면에 걸쳐 는 벨트 중심)	정주기반 확충 (도로건설 위주)	-시·군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민자유치 저조 및 예산부족으로 사업 지연
문화관광 자원개발	문광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1999년	-50%정률 보조	사업별 차이			도농교류사업	

주) ◎: 완결성 높음 ○: 계획 요건을 갖추 △: 부분적 계획임.

제 3 장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특징과 평가

1.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특징

1.1. 사업의 근거법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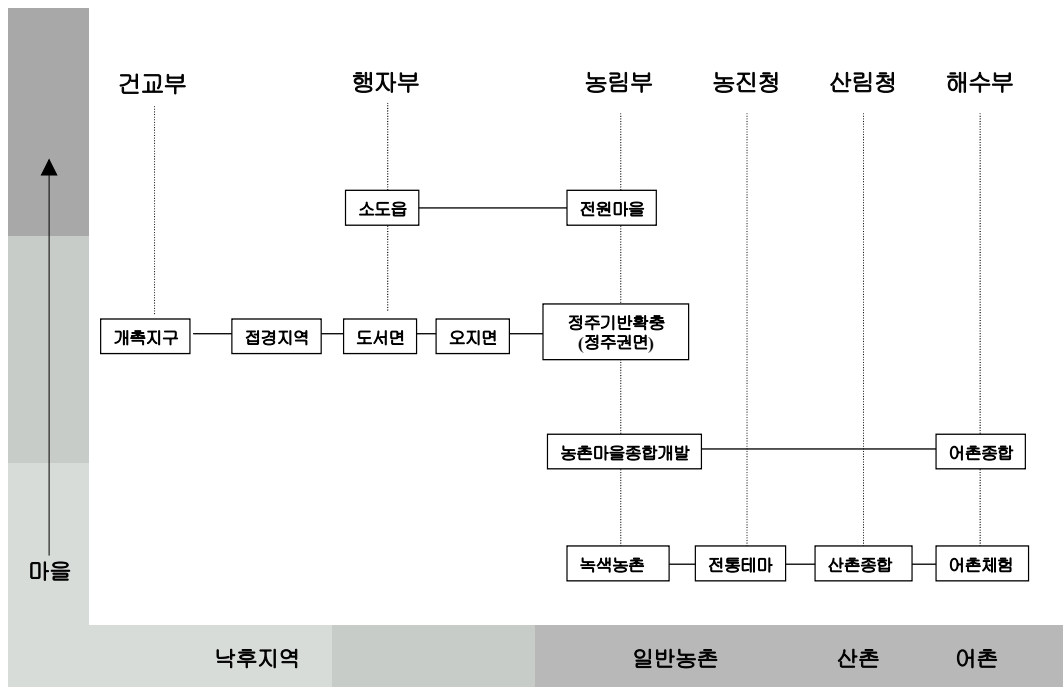
- ☐ 모든 개발사업이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오지개발촉진법 및 도서개발촉진법은 한시법적 성격을 가짐.

1.2. 사업의 공간적 범위

- ☐ 사업의 공간 범위는 마을, 마을권, 읍·면 지역, 읍·면 소재지, 시·군 일부지역(대체로 3~5개 읍·면) 등으로 다양함.
 -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 마을권: 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면 소재지 내지 중심마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3~5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함.

- 읍·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읍), 전원마을조성사업(면)
- 읍·면 지역: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 시·군의 일부: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등

<그림 1> 공간범위에 따른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분포



□ 마을을 단위로 한 4개 사업들은 암묵적으로 농촌·산촌·어촌이라는 공간 구분을 하고 있음.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함.
-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함.
-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은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함.

□ 읍·면 단위 사업도 정주권면·오지면·도서면 등 나름의 공간 구분을 하고 있음.

- 정주권면과 오지면은 그 구분 타당성이 모호함(부록1의 그림 참고)²⁾.
 -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사업 내용이나 현장에서의 추진 방식에도 큰 차이가 없음.

1.3. 사업의 내용적 범위

□ 사업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하드웨어 정비가 주를 이룸.

- 사업 내용에 따라 크게 정주기반 확충사업, 도농교류 촉진사업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도농교류 촉진사업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비중을 두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정비에 치중함.
 -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중에서는 최근 본격화된 소도읍육성사업과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괄하려는 노력이 보임.

2)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노령인구비율, 사업체밀도, 취업자비율, 사업체생산성, 노동생산성, 최근창업율 등 8개 지표의 200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충청남도 면지역의 낙후도를 평가해 본 결과, 기존의 오지면 지정과 무관한 결과가 나왔다.

<표 3> 사업의 주요 내용

사 업 명	주 사업내용	비 고
접경지역지원사업	마을안길, 간이상수도, 종합복지회관, 하수도, 소하천정비, 가로등 설치, 소공원 조성 등	정주기반 확충
도서종합개발사업	급수, 전기, 도로시설, 소규모 여항시설(물량장, 방파제, 선착장), 농업기반 시설(배수갑문, 도수로정비), 하수시설, 복지회관, 연육·연도교 건설 등	정주기반 확충
오지종합개발사업	농경지 진입로, 진입로 확·포장, 마을안길, 간이상수도, 도수로, 농산물 집하장, 종합복지회관, 하수도, 소하천정비, 가로등 설치 등	정주기반 확충
소도읍육성사업*	지역산업진흥(특화산업, 재래시장·중심상점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정비,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역의 발전비전·테마에 맞게 추진	정주기반 확충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초생활, 문화·복지, 소득, 경관·환경, 농촌체험·휴양시설 건립, 생태주차장·소공원·수변공원, 전통문화체험·습지정화·정보화시설, 역사탐방산책로, 향토박물관, 마을경관형성, 마을 숲 등 종합정비, 컨설팅, 교육훈련비 등	정주기반 확충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정주기반확충사업	마을내도로, 연결도로, 교량, 상·하수도, 복지회관, 쓰레기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하천정비, 빈집및불량시설물 철거, 마을안길 녹화사업 및 소공원 조성, 마을광장, 주차장, 수변공간정비, 식생담설치, 면지역 및 마을관광안내판 설치 및 명소 환경정비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조성사업	생활기반시설 정비, 전문화된 전원마을(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장, 은퇴농장) 조성, 택지조성, 마을 안길, 상·하수도, 놀이터, 농기계보관소 등 종합정비	정주기반 확충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지원, 컨설팅, 설계비, 교육훈련·홍보비	도농교류
지역특화사업보조사업*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 지역브랜드개발, 지역의 농업특성과 자원·전통문화 등 부존자원 연계 개발	자원개발
산촌종합개발사업	임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주거환경개선	정주기반 확충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	주차장, 마을안길정비, 산책로, 종합안내센터, 다목적광장, 어촌진입로, 진입도로포장, 가로등, 조경식재 및 시설, 수상레저편의실, 해변광장, 먹거리장터, 야영장	도농교류
어촌종합개발사업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소득원도로, 냉장저온창고, 생산집하시설, 공동창고, 어촌관광·부업시설 등	정주기반 확충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체험·학습시설, 숙박 및 편의시설정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마을전문가 양성), 전문가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캐릭터 개발 등	도농교류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접근교통망시설(도로) 건설	정주기반 확충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하수도정비, 습지, 수생식물원, 영상체험관, 상하수도, 선사문화전시관 건립, 담수용 연못, 진수공간, 오토캠핑, 캐빈하우스	도농교류

주) *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1.4. 사업 성격의 차별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에 근거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유형화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 소도읍육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5개 사업
 - 소도읍육성사업 및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읍·면 소재지의 기반정비 및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
 -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일반 정주권면의 기반정비 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각각 어촌과 산촌의 기반정비 사업
- 낙후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등 4개 사업
 - 낙후 농촌지역 개발사업 역시 약간의 중복이 있으며 어느 정도 공간을 분할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나, 여기에 낙후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신활력사업”이 부가됨으로써 공간적 중복 등 혼란의 야기가 불가피함.
- 도농교류 등 소득기반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등 4개 사업
 - 소득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농촌지역의 특성상 정주기반 확충과 병행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기존 공공투자 대상마을들을 포함하여 권역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성격이 다름.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등은 사업 추진상 약간의 차이 이외에 차별성이 거의 없음.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은 사업 추진기간, 컨설팅비를 형식적으로 마을에서 집행하느냐 시·군에서 집행하느냐, 사업 내용상 개별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임.
- 기타: 지역특화사업보조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2개 사업

<표 4>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일반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 사업	낙후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 사업	도농교류 등 소득기반 조성 사업	기타
소도읍육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보조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5.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식

□ 사업 추진 절차와 방식을 유형화하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음.

- 법률 등에 의하여 사업 대상이 先 지정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형태: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
- 법률 등에 의하여 사업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절차의 객관성,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의식 등을 고양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취하여 추진하는 형태: 소도읍육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등
- 시·군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공모한 지역 중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등

□ 사업 추진 절차와 방식 등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낙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의 창의와 자율에 의한 낙후지역 탈피 수단이 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
 -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현행 행자부 추진 낙후지역 지원사업은 행자부에서 일정한 형식(사업비규모,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내려주고 지방에서 그에 적합한 사업수요를 발굴하여 사업물량을 종합하는 방식임.
 - 주민은 단순 도로 확·포장보다는 미래지향적 사업, 소득연계형 사업을 요구하나

수용이 어려움.

-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은 민자유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 데다 재원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현실성 없는 민자유치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1개 지구당 가장 경쟁력·실현성이 높은 사업 1~2개 정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면 단위 지역개발사업은 도로정비사업 위주로 소액 분산 투자되고 있음.

- 면 단위 지역개발사업은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식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일반 정주권면, 오지면, 도서면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각각의 해당 사업을 추진 중임.
- 정주기반확충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해당 면의 농어촌도로, 리도 등의 정비수요에 따라 마을별, 연차별로 소액 분산 투자되는 방식임.
- 아래의 <표 5>는 제천시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예임. 그 밖에도 영동군의 예를 들면, 현재까지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총 22,877백만 원으로 6개 면에 147건의 사업이 시행된 바 있음. 면별로는 38억 원, 사업별로는 1억 5천 6백만 원이 투자된 것임.

<표 5>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개소당 사업비 배분 사례

단위: 백만 원

구 분	개소	금액	개소당 금액
A면	17	2,000	118
B면	16	2,000	125
C면	15	2,000	133
계	48	6,000	125

주)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바탕을 둔 것이며, 주요 사업은 교량 가설, 농경지 진입로 개설, 마을안길 포장 등으로 구성됨.

자료: 제천시 내부자료, 2003.

○ 마을 단위 지역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체계 등의 중복이 상대적으로 심함.

- 특히,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사업비의 상향 조정,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후 관리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시·군 내의 다양한 마을 단위 사업들이 통합 추진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신활력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적지 않음.
 - 기존에 지방양여금 등으로 지원되던 사업을 방식만 바꾸어 추진하여 시·군의 일거리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며,
 - 소액 사업으로서 낙후지역 탈피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임.

2.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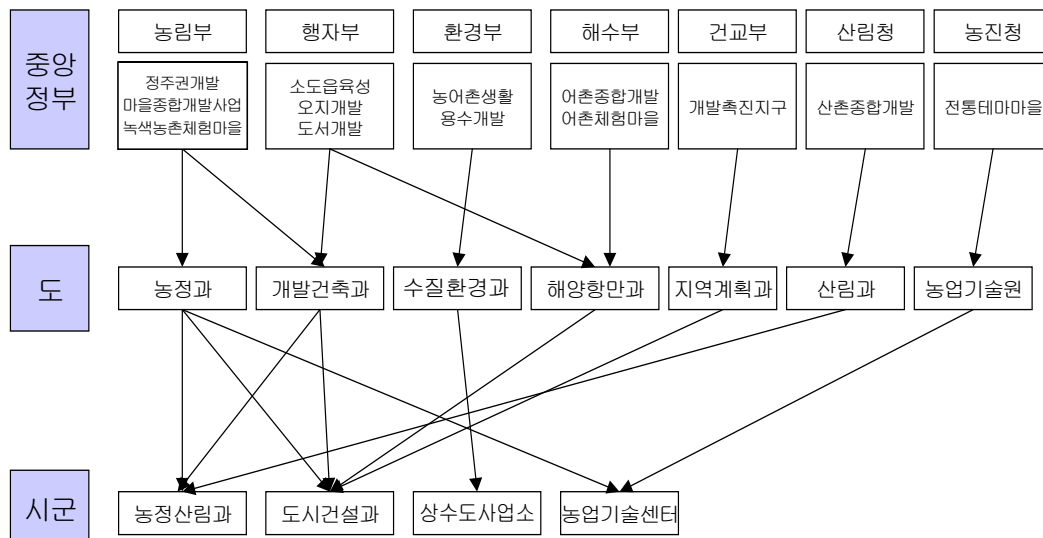
□ 사업간 중복성 존재

-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격상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장에서의 비효율성 발생

- 사업 추진 계통이 다기화되어 있어 시·군 단위에서 종합화·체계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그림 2>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중앙·지방간 추진 체계 예시



□ 농촌 정주체계 및 부처 간 기능과 무관한 공간(정책대상지역) 분할 체계

- 국토 속의 농촌의 위상과 역할 및 농촌의 정주체계, 생활권, 경제권 등을 고려치 않고 편의적으로 공간 구분
 - 오지면 · 정주권면 구분, 농촌 · 산촌 · 어촌 구분이 혼재
- 부처별 미션과 기능에 부응하지 않는 업무 추진
 -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 · 선거 · 국민투표 및 민방위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독(정부조직법 제31조)
 - 건설교통부는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발 및 개조,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제40조)
 - 농림부는 농산 · 잠업 · 식량 · 농지 · 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제46조)
 - 문화관광부는 문화 · 예술 · 영상 · 출판 · 간행물 · 체육 · 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해양수산부는 수산 · 해운 · 항만 · 해양환경보전 · 해양조사 · 해양자원개발 · 해양 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관련되는 실험 및 연구, 농민 지도, 농촌지도자의 수련 등의 업무 관장
 - 산림청은 산림 보호 육성, 산림자원 증식, 임산물 이용개발, 산림경영의 연구와 개선 업무 관장

□ 사업 내용의 시의성 및 차별성 미약

- 사업 목적과 내용 측면에서 급변하는 시대적 수요와 지방의 현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업이 많음.
 - 사업 목적이나 공간 단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하드웨어 정비가 주 내용을 형성
 - 농촌에 대한 장기 비전, 농촌 지역개발의 방향성이 미정립된 채 20년 전, 10년 전에 디자인된 사업이 여전히 지속

□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 신활력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모호

- 법률적 논거를 따르면 우리나라 낙후지역은 ①오지면 ②도서면 ③개축지구 ④접경지역 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임. 신활력사업은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의 아무런 관계 설정 없이 “기타”이면서 공간적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로 등장함.³⁾
 - 신활력사업은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 동일한 정책 목표 하에 포괄적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함.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불명확

※ 신활력사업 개요

- 지역 선정
 - 지표: 인구(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산업경제(소득세할주민세), 재정(재정력지수)
 - 범위: 전국 234개 지자체 중 하위 30%로 70개 시·군
- 지원 규모
 - 매년 2,000억 원의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2005년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활력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아이템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래 표 참고). 그런데 지원 요건 중에는 가급적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신규사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경우 기존사업과 연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며 지자체 스스로 사업간 효율적 연계방안, 차별화 방안, 중복투자 방지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상당한 책임을 지자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신활력사업의 예시>

사 업 범 주	개 별 사 업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주체들의 육성 ○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신활력사업 계획 및 관리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	○ 지역특화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 도농상생을 위한 5도2村사업 및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 신기술·신인력·신기업가 육성
공공 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	○ 교육·의료·교통·통신 등 공공서비스개선 프로그램 개발 ○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강화	○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 지원 방안

- 3년간 일정액 지원, 최대 3번까지만 선정 및 지원
-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후 중장기 지역발전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내생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집행
-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 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검토
-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

제 4 장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1. 체계화의 원칙과 방향

□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 지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농촌 지역개발은 지방의 자율적 역량 강화에 기여⁴⁾

□ 농촌지역의 정주공간체계에 부응하는 사업 체계

- 정주체계상 중심지 > 배후 마을 > 오지 마을 등으로 서열화가 가능하며, 사업 내용은 점차 정주기반 확충과 소득기반 조성을 겸하는 방식으로 전환
 - 농촌 지역개발은 국토의 효율적 정비에 기여

4)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이 체계화되더라도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방의 수권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사업의 공간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도농교류 및 소득사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방의 자율적 개발 역량 강화가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하드웨어 정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광의의 지역개발은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까지를 포함한다.

□ 중앙정부 부처 간 미션과 기능을 고려한 역할 분담 체계

- 중앙정부 부처마다 고유한 업무 미션과 노하우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
 - 상호의 시너지효과 기대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통합된 시행 체계

- 유사한 사업 목적과 내용으로 시행되는 단위 사업들을 통합, 연계 추진
 - 투자 효율성 증진 기대

2. 체계화 방안

□ 오지면과 정주권면의 구분 해제

- 모든 면을 대상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 등 확대
 - 정주권면에만 적용되는 사업을 오지면까지 확대
 -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통합 추진
 -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시대적 요구와 상황, 지방의 창의와 자율에 적합하게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을 업그레이드

□ 마을 단위 사업의 통합 추진⁵⁾

- 농촌, 산촌, 어촌으로 잠정 구분하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은 통합
 -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역시 대상 공간 및 사업비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통합 추진 고려

5) 여러 부처에서 마을 단위 사업을 분산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농촌 지역 전체로는 수혜의 폭이 커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고 이는 현재의 정책추진체계에서는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만약 현재 규모의 예산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시·군 나뉘므로 특성에 맞는 마을 단위 사업을 재배열하도록 하거나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자의 효과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보다 높다.

-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업 추진 과정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
 - 통합 예산 편성 추진

□ 신활력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의 차별성 확보

- 신활력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
 - 새로운 사업의 추가가 아닌 기존 낙후지역 사업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큼. 가령, 신활력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세제상의 우대, 예산증액교부, 개발사업 추진의 자율권 부여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확충이 오히려 요구됨.
 - 그러나 이미 하나의 사업으로서 출발하는 상황
 - 신활력지역은 국토속의 일부, 혹은 농촌의 일부 지역에 불과함. 따라서 전체 국토 개발정책과 농촌 지역개발정책에 더하여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를 추가하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농촌이 낙후지역인 것은 아님.⁶⁾
- 시·군내의 실질적인 낙후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
 - 1개 시·군 내에서도 다양한 양태의 불균형이 존재
 - 자연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대부분이 낙후지역에 속하였으나, 고규격 도로망 개설과 함께 1개 시·군 내에서도 낙후지역이 패치 형태로 분산 존재하거나 시·군 경계를 넘어 광역 연담형으로 벨트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함.
 - 시·군 단위 신활력지역 지정은 적합지 않음.
-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내용 필요
 -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은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시행. 장기적으로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6) 신활력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다루는 농촌 지역개발사업 모두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세제 감면, 예산 증액, 사업 추진상 자율권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기존 균특회계 내 농촌 지역개발사업, 기타 타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사업과의 중복을 최대한 탈피
 - 사업 내용은 negative 방식으로 예시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존중
 - 지역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은 전적으로 수용
 - 미국의 농촌 EZ/EC사업의 예를 보면, 도박·매춘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은 모두 인정
 - 추진 방식은 시·군의 간략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약 체결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원
 - 지방 단위에서 소액 분산 투자 등과 같이 낭비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지침만을 제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면 충분
 - 경쟁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타 신활력지역을 탄생시키고 그 사례를 전파
 - 사업 주관은 관계 부처별 협의에 의한 공동 추진
 -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주로 담당해 온 행자부가 하되, 그런 경우 오지종합개발 사업 등은 중단하고 부처 성격에 맞게 관계 부처별 협의에 의한 공동 추진 체계 구축
-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효과 평가는 장기적 관점을 요구
 - 신활력사업이 3년간 9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타 사업에 비해 소액), 시·군마다 출발하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며(신활력지역의 여건 다양), 그로 인한 여하한 성과는 기존 혹은 동시에 추진되는 타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와 결합된 것임을 고려할 때 3년 만의 사업 자체에 대한 단독 평가는 불가능하거나 형식에 가까움.
 - 이 사업의 평가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부진한 이유를 찾아 개선해 나아가는 정도가 적합함.

□ 균특회계에서 나가고 들어와야 할 사업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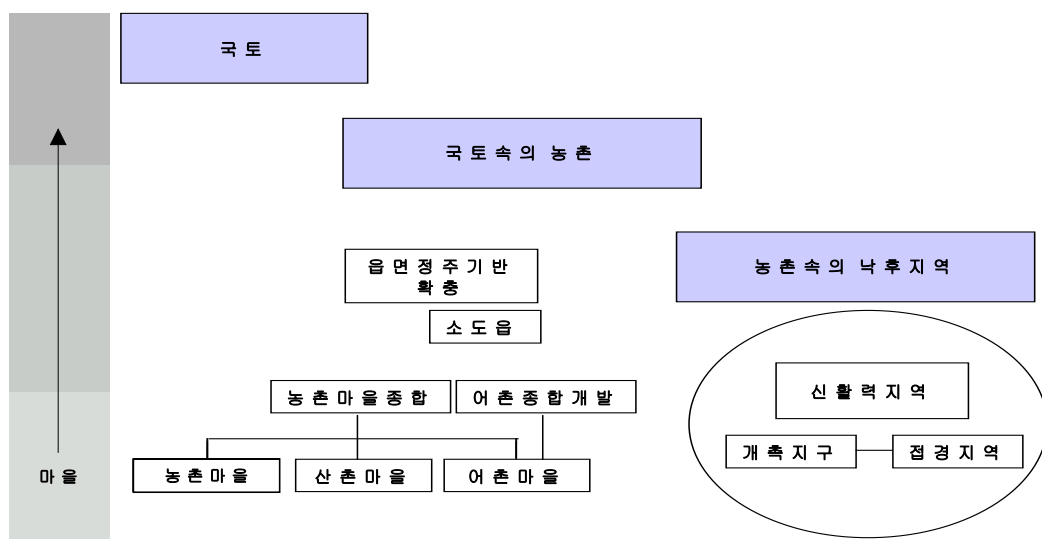
- 지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거나, 소액사업이거나, 혹은 손이 많이 가는 사업 등은 전략적으로 기피
 - 방재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

-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큰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합의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나 각 시·군에서는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 위주로 예산을 신청·집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애로
-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하거나 예산 한도의 사업으로 인정
 - 공모방식은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상호 경쟁에 의한 집중 지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

□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개발 총괄법 제정

- 현재는 부처별로 해당 부처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법을 제정
 - 농촌 지역개발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매몰
- 국토속의 농촌의 역할과 비전, 농촌 지역개발의 방향성, 실현을 위한 필요 사업 등을 담아 통합적인 총괄법 제정
 - 1개의 통합 법률을 중심으로 사업법들이 위치

<그림 3>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체계 구상(안)



□ 체계화를 위한 순서와 단계 설정

- 신활력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 기존 정책에 대한 중복성 비판은 정확히 하면서도 유사한 정책사업을 중복하여 추가하는 관행은 철저히 방지
- 부처별 자체 혁신역량 제고·기능조정과 연계하여 사업 조정
 - 동일 부처 내에서 사업 조정 및 사업 내용 전환 후, 부처 간 사업 조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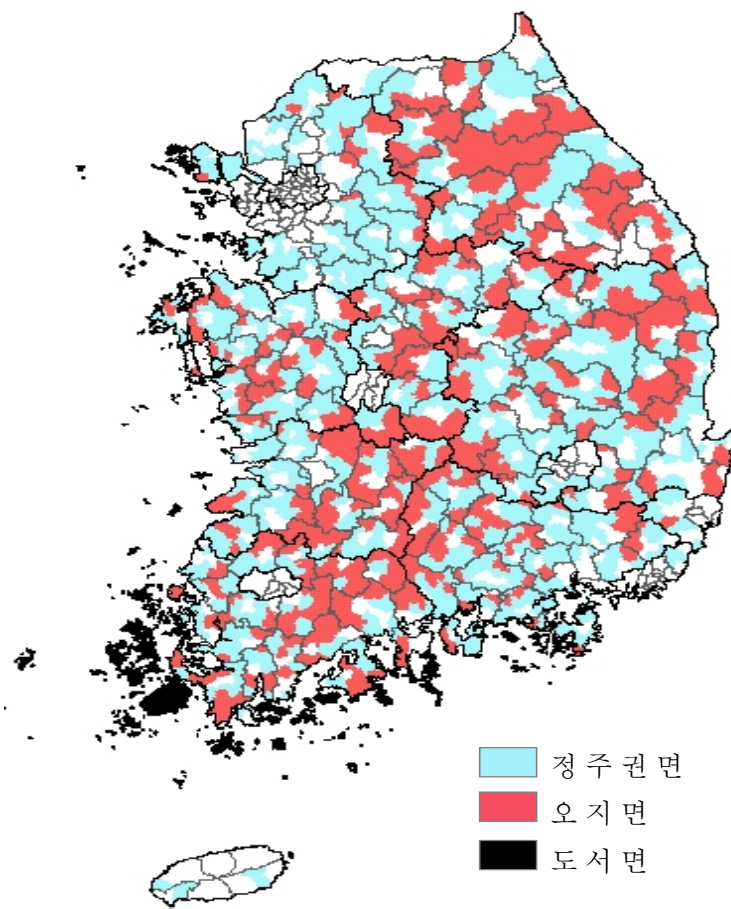
<표 6>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현행 체계	개선 체계
목표	1. 정주기반 확충(national minimum) 2. 낙후지역 기반정비 3. 도농교류 기반구축	1. 도농교류 활성화 2. 정주기반 질적 향상(quality of life) 3. 낙후지역 활력 증진
수단	1. 접경지역지원(행자부) 2. 도서종합개발(행자부) 3. 오지종합개발(행자부) 4. 소도읍육성(행자부) 5.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 6. 정주기반확충(농림부) 7. 전원마을조성(농림부) 8.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9. 산촌종합개발(산림청) 10. 어촌체험관광마을(해수부) 11. 어촌종합개발(해수부) 12. 농촌전통테마마을(농진청) 13. 개발촉진지구지원(건교부) 14. 신활력사업	1. 접경지역지원(행자부) 2. 도서종합개발(중단 고려) 3. 오지종합개발(중단) 4. 소도읍육성(행자부) 5.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 6. 정주기반확충(성격전환) 7. 전원마을조성(성격전환, 중단 고려) 8. 도농교류마을정비(통합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 산촌종합개발(산림청) - 농촌전통테마마을(농진청) - 어촌체험관광마을(해수부) 9. 어촌종합개발(해수부) 10. 개발촉진지구지원(중단 고려) 11. 신활력사업(부처 공동 추진)
특징	1. 중앙정부 부처 주도 2. 하드웨어 정비 위주	1.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화

부 록 1

오지면과 정주권면 구분의 현황 및 타당성

<부록 그림 1> 전국의 면 구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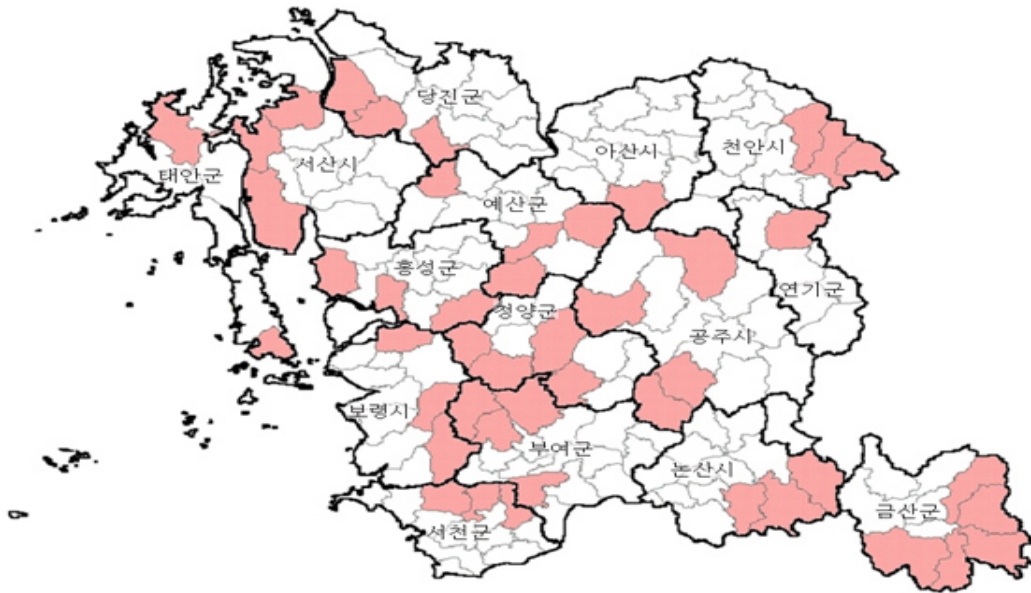


○ 오지면 구분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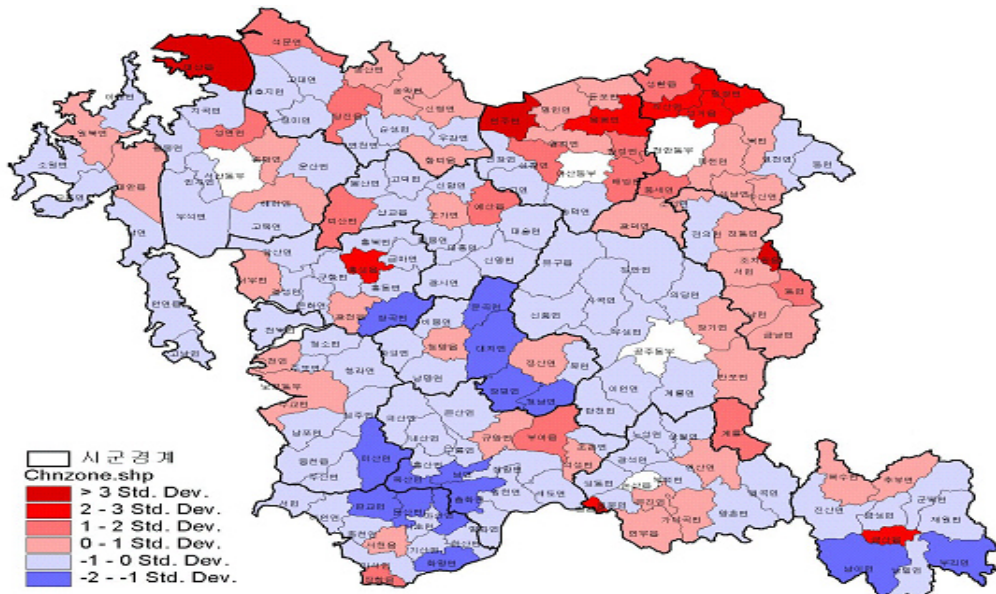
- 인구, 고용, 지역경제 부문: 인구증가율, 제조업 종사자, 일인당 소득
- 교통, 통신, 생활환경 부문: 승용차 보유율, 도로율, 도로 포장율,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입식 부엌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 교육, 복지, 지방재정 부문: 중졸 이상 인구, 영세민 비율, 재산세액, 임야율

※ 위의 지표들을 이용해서 주성분분석 등으로 산출된 각 성분점수를 합산. 낙후도는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노령인구비율, 사업체밀도, 취업자비율, 사업체생산성, 노동생산성, 최근창업율 등 8개 지표의 200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부록 그림 2> 충청남도 오지면 분포



<부록 그림 3> 충청남도 낙후도 평가 결과(2002)



- 주 1. 낙후도는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노령인구비율, 사업체밀도, 취업자비율, 사업체생산성, 노동생산성, 최근창업율 등 8개 지표의 200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주 2. 낙후도 평가 결과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낙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록 2

균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현황

1.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 근거법률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94)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건설교통부
- 사업시행주체: 건설교통부 지방국토청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목적

- 낙후지역형 개촉지구지원사업 중 접근교통망시설(도로) 건설을 지원하여 개발수준이 낙후된 지역 발전 도모
-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2개 법률 의제 및 국고보조 개발사업자에 대한 소득, 양도, 재산세 등 감면

☐ 사업 기간

- 1995년 ~ 2008년

☐ 사업추진기간

- 지구별 사업에 따라 다름.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토특회계)”의 세입 부족에 따른 투자 저조 때문

☐ (사전)계획수립 여부

- 시·군 개발계획 수립

☐ 공간범위

- 시·군
 - 수도권,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의 시·군(165개 시·군 중 72개 시·군이 지정요건에 해당)
 - 주로 2~3개 면에 걸치는 벨트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원방식

- 국가 직접 수행

☐ 사업비

- 총사업비: 1조 4,267억원(‘03년까지 기 투자액: 6,339억원)
 - 개소당 500억
- 국고 100%(도로시설 한정)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접근교통망시설(도로) 건설
- 실제 집행 사업(기존 집행 실적)
 - 접근교통망시설(도로) 건설

□ 사업 추진 절차



□ (자체) 평가 유무

- 2003년 11월 연찬회
- 건교부와 시군 합동으로 사업 전반을 평가하여 타당성 낮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이 제안

▶ '05년 지원원칙·기준(변화내용)

- 낙후지역형·균형개발형·도농통합형 개축지구 중 낙후지역형 개축지구에 한하여 재정 지원
- 낙후지역형 개축지구의 접근교통망시설(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부처별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
 - 건교부 사업으로 도로사업에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국비 지원

2. 접경지역지원사업

☐ 근거법률

- 접경지역지원법('00.1월)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행정자치부
- 사업시행주체: 시·군

☐ 사업 목적

- 남북분단의 특수한 여건으로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국가적 배려 차원에서 지원
- 최종수혜자인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및 생산시설 정비를 추진

☐ 사업 기간

- 2003년 ~ 2012년

☐ 사업추진기간

- 5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사업계획 수립

☐ 공간범위

-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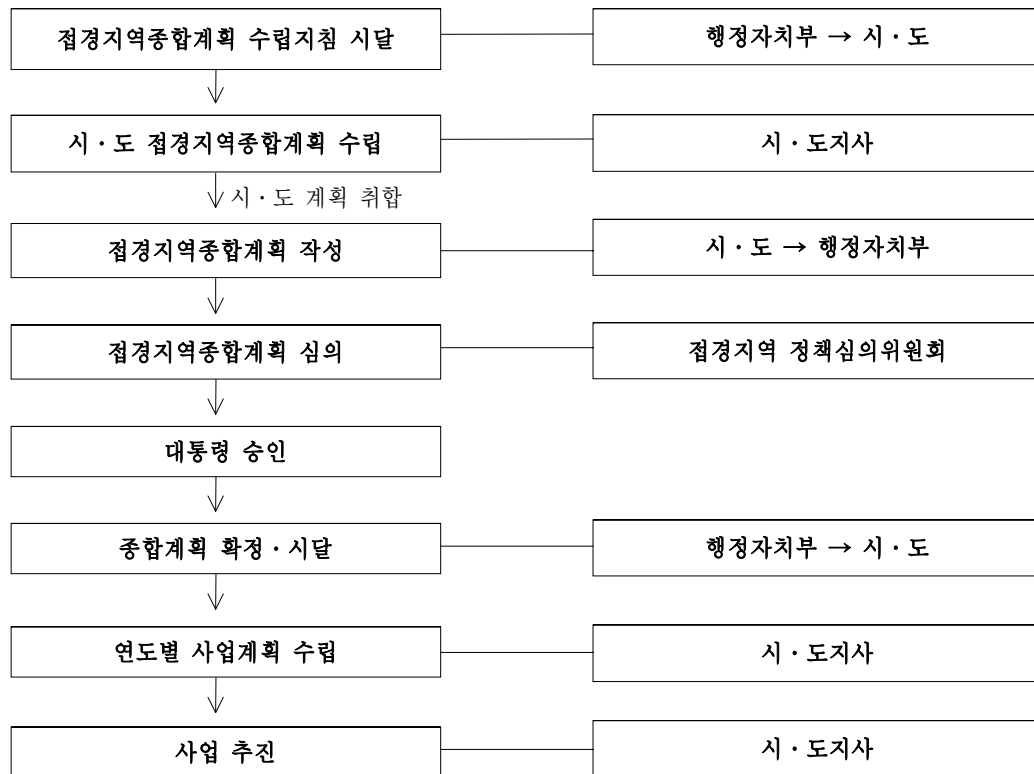
☐ 사업비

- 총사업비 14개 부처, 274건, 총 5조 1,278억원 소요
 - 행정자치부 9,671억원(국비 6,726억원, 지방비 2,883억원, 민자 62억원)
 - '03년까지 기 투자액: 200억원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산림·환경보전,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정주생활환경개선,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문화재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 지역별전략사업
- 실제 집행 사업(기존 집행 실적)
 - 마을안길, 간이 상수도, 종합복지회관, 하수도, 소하천정비, 가로등 설치, 소공원 조성, 용배수로 정비, 마을공동창고, 주차장 정비, 교량설치, 보도블럭, 홈페이지 구축 등

□ 사업 추진 절차



□ (자체)평가 유무

- 향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반영 예정

3. 도서종합개발사업

□ 근거법률

- 도서개발촉진법('86) 제10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행정자치부
- 사업시행주체: 시·군·구

☐ 사업 목적

-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 장기적·종합적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사업 기간

- 1988년~2007년
 - 1차 10개년 계획(1988년~1997년), 2차 10개년 계획(1998년~2007년)

☐ 사업추진기간

- 10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10개년 계획 수립
 - 사업물량계획

☐ 공간범위

- 53개면 410개 도서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개발도서별 2억원

☐ 사업비

- 총사업비('98~'07) 2조 2,296억원(국비 1조 5,497억원, 지방비 6,135억원, 민용자 66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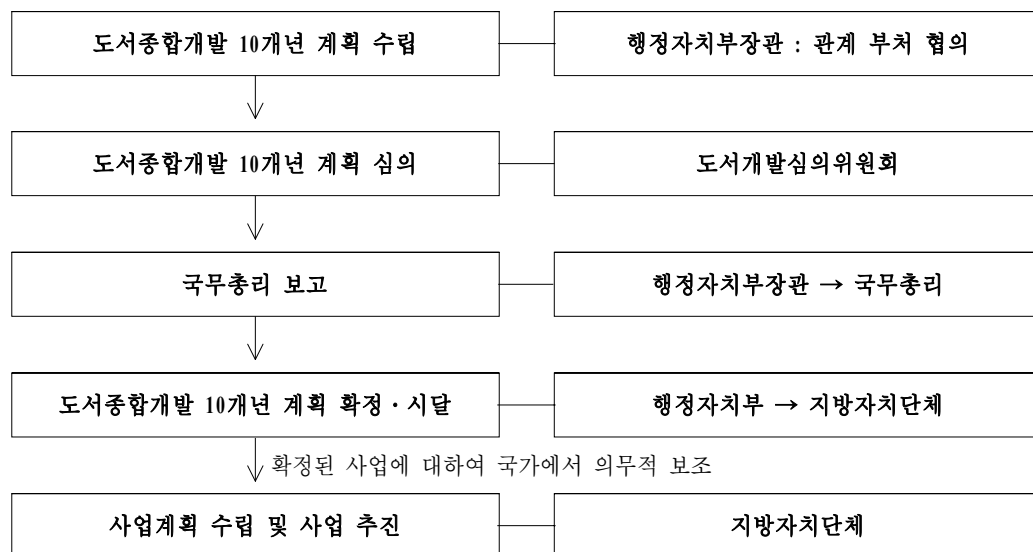
- 행정자치부 11,296억원(국비 7,472억원, 지방비 3,206억원, 민용자 618억원)
- '03년까지 기 투자액(국비): 3,203억원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급수, 전기, 도로시설, 소규모 어항시설(물량장, 방파제, 선착장), 농업기반시설(배수갑문, 도수로정비), 하수시설, 복지회관, 연육·연도교 건설 등

□ 사업 추진 절차



4. 오지종합개발사업

□ 근거법률

- 오지개발촉진법('88.12.31)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행정자치부
- 사업시행주체: 시·군

☐ 사업 목적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 사업 기간

- 1990년~2004년
 - 1차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90~'99)
 - 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00~'04)

☐ 사업추진기간

- 2~3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사업물량계획 수립

☐ 공간범위

- 오지면
 - 1차 오지개발대상지구(전국 403개 오지면)
 - 2차 오지개발대상지구(전국 399개 오지면)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면당 20억원

□ 사업비

- 총사업비('00~'04) 1조 5,264억원(국비 5,628억원, 양여금 5,613억원, 지방비 3,955억원, 민용자 68억원)
 - 행정자치부 8,018억원(양여금 5,612, 지방비 2,406)
 - '03년까지 기 투자액: 7,325억원(양여금 5,159, 지방비 2,166)
- 지방양여금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전기·통신·도로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 농업·공업·임업·수산업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개선
 -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 하천개수·방조제 축조 등 국토보전 시설의 정비·확충
 -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 등
- 실제 집행 사업(기존 집행 실적)
 - 농경지 진입로, 진입로 확·포장, 마을안길, 간이상수도, 도수로, 농산물집하장, 종합복지회관, 하수도, 소하천정비, 가로등 설치 등

5. 소도읍육성사업(소도읍개발)

□ 근거법률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01.1.8)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행정자치부
-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 목적

-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하는 주제별 개발사업 추진으로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

☐ 사업 기간

- 1972년~2012년

☐ 사업추진기간

- 4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소도읍육성계획 수립

☐ 공간범위

- 읍과 일부 규모가 큰 면
 - 전국 194개 읍(면)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1개 소도읍에 4년간 100억원 분할지원

☐ 사업비

- 총사업비('03~'12): 12조원(국비 4조원, 지방비 2조원, 민자 6조원)
 - '03년까지 기 투자액: 60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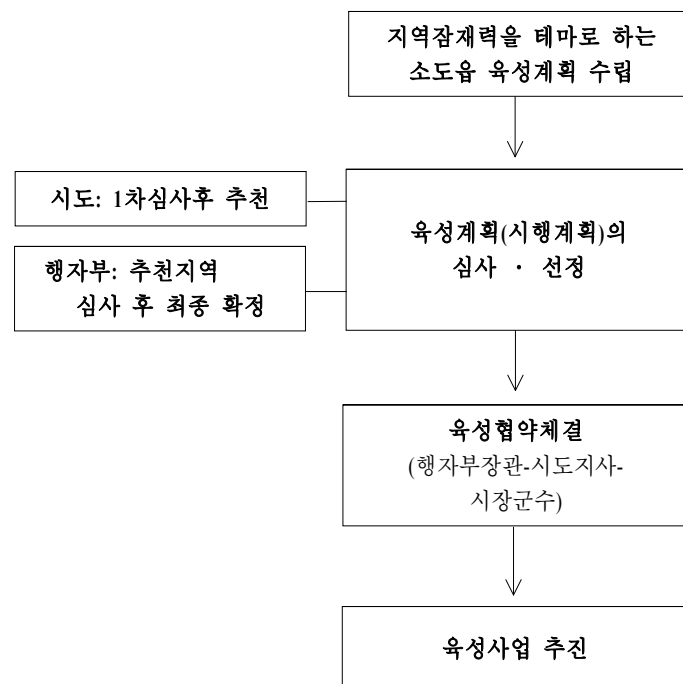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지역산업 진흥, 도시기반시설 설치, 생활환경 정비, 문화관광 개발 등
-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 사업 등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테마로 하는 주제별 개발사업
- 실제 집행 사업(기존 집행 실적)
 - 실버타운 및 보양관광촌 조성, 늘머니과일랜드 조성, 인삼·약초타운 조성, 중앙공원 조성,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친수환경 조성, 노인전문 요양원, 애견 종합타운 조성, 한국곤충 생태체험타운, 첨단화훼 수출단지, 청정문화관광사업, 레저스포츠산업 단지 등

□ 사업 추진 절차

- 공모제
- 육성협약제



☐ (자체) 평가 유무

- 2003년 선정지역 사업 추진상황 점검('04.5)
- 소도읍별 전문가 자문제도 도입(예정)

☐ 지방에서의 인지도 및 평가

- 지원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지도 높고 자치단체 관심도 많음.
- 대부분 지역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나, 시장·군수의 선거승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가 되고 있음.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94.12) 제29조, 제4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04.3) 제38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농림부
-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 목적

- 주변경관 및 생활공간, 소득확충사업 등 종합적 개발

☐ 사업 기간

- 2004년~ 2013년

☐ 사업추진기간

- 3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기본계획 수립

☐ 공간범위

- 소권역(3~5개 법정리)
 - 전국 1,000개 권역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권역당 3년간 평균 70억원 지원(유형별 차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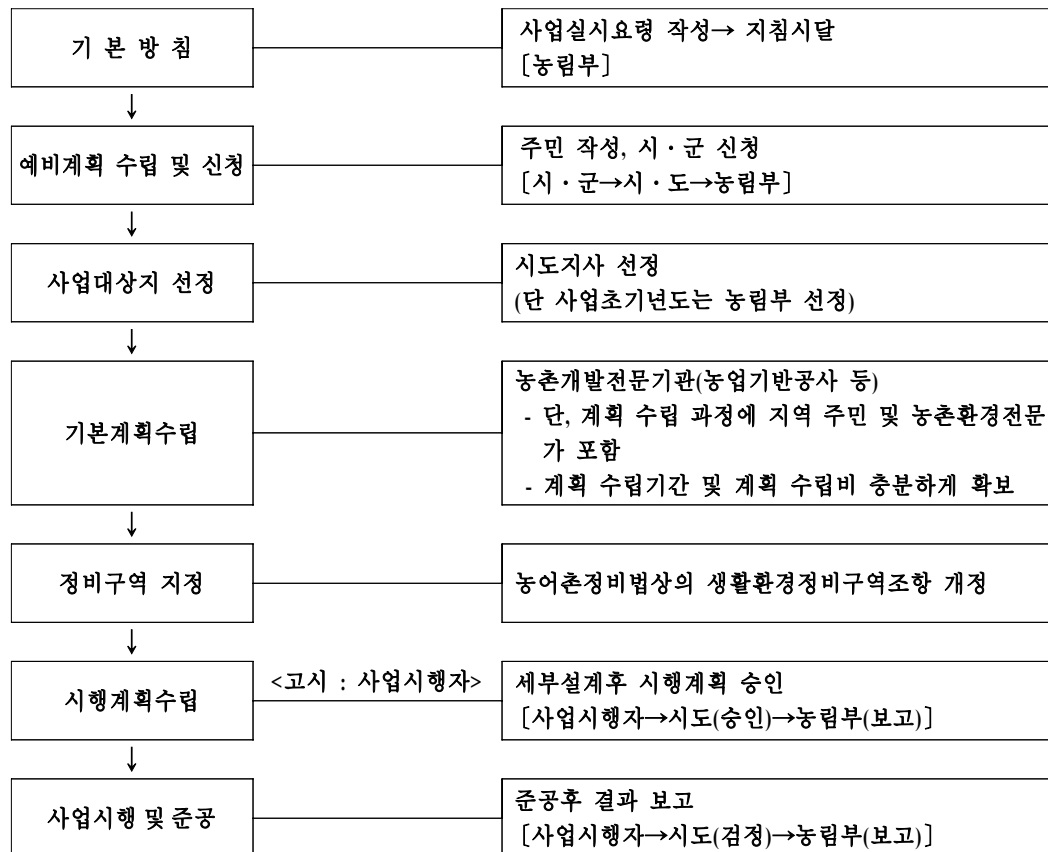
☐ 사업비

- 총사업비('04~'13): 57,400억원(국비 45,920, 지방비 11,480)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기초생활, 문화·복지, 소득, 경관·환경, 농촌체험·휴양시설 등 건립
 - 생태주차장·소공원·수변공원, 전통문화체험·습지정화·정보화시설, 역사탐방산책로, 향토박물관, 마을경관형성, 마을 숲 등 종합 정비

□ 사업 추진 절차



□ (자체)평가 유무

- 모니터링 제도 유

7. 정주기반확충사업(구: 정주권개발사업)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94.12) 제29조, 제42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농림부
-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 목적

-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있는 농촌 조성

☐ 사업 기간

- 1990년~2013년

☐ 사업추진기간

- 5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계획수립

☐ 공간범위

- 757개면
 - 전국 1,219개면 중 오지개발(399), 도서개발(53), 무인면(10)을 제외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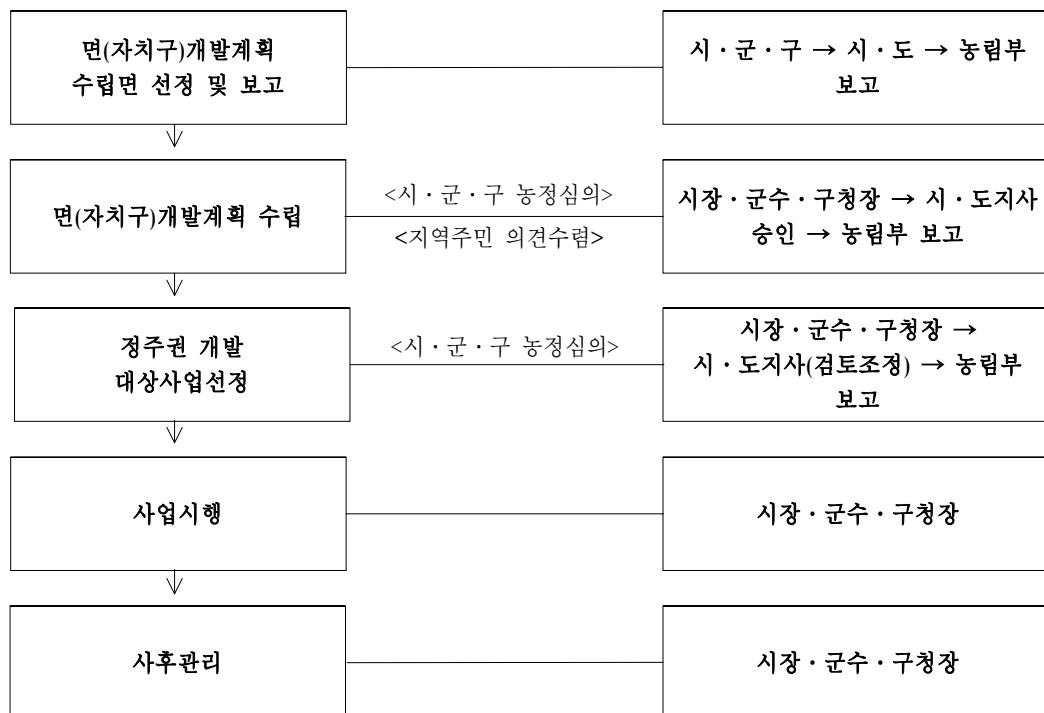
- 총사업비('90~'13): 154,625억원(국고및지방양여금 149,471, 지방비 5,154)
 - 지방양여금 80%, 지방비 20%

- 정액지원(면당 30억원), 주택 신축·개량자금으로 면당 15억원 융자(농특회계)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마을기반시설: 마을내도로,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교량, 상·하수도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쓰레기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하천정비 등
 - 농촌공간정비: 빈집및불량시설물 철거, 마을안길 녹화사업 및 소공원 조성
 - 마을광장, 주차장, 수변공간정비, 식생담설치, 면지역 및 마을관광안내판 설치 및 명소 환경정비
 - 주택정비: 신축·개량 등

□ 사업 추진 절차



8. 전원마을조성사업(구: 문화마을조성사업)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94.12) 제29조, 제42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농림부
-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 목적

- 농촌 주민은 물론 전원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생활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마을공간 조성

☐ 사업 기간

- 1991년~2013년

☐ 사업추진기간

- 2~3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단지계획 수립

☐ 공간범위

- 마을
 - 762개 정주권면의 중심마을
 - 면의 중심(거점)마을 370개소

□ 지원방식

- 지자체 자본이전
 - 마을당 평균 30~50억원
 - 보조: 20~30억원 수준(지방양여금 100%), 용자: 10~20억 수준

□ 사업비

- 총사업비('91~'13): 9,250억원(국고 및 지방양여금 7,400, 지방비 1,850)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생활기반시설 정비, 전문화된 전원마을(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장, 은퇴농장) 조성
 - 택지조성, 마을안길, 상·하수도, 놀이터, 농기계보관소 등 종합정비
- 실제 집행 사업(기존 집행 실적)

□ 사업 추진 절차



9. 녹색농촌체험활동(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

☐ 근거법률

- 농업농촌기본법
- 농어촌정비법('94.12)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농림부
-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 목적

-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유치하여 가족단위 휴양·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
는 농외소득증대 등의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

☐ 사업 기간

- 2002년~2013년

☐ 사업추진기간

- 1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마을조성사업계획 수립

☐ 공간범위

- 마을
 - 도별 2개 마을(20호 이상, 둘 이상 마을-30호 이상)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마을당 2억원 씩 지원(1억원 국비 보조)

□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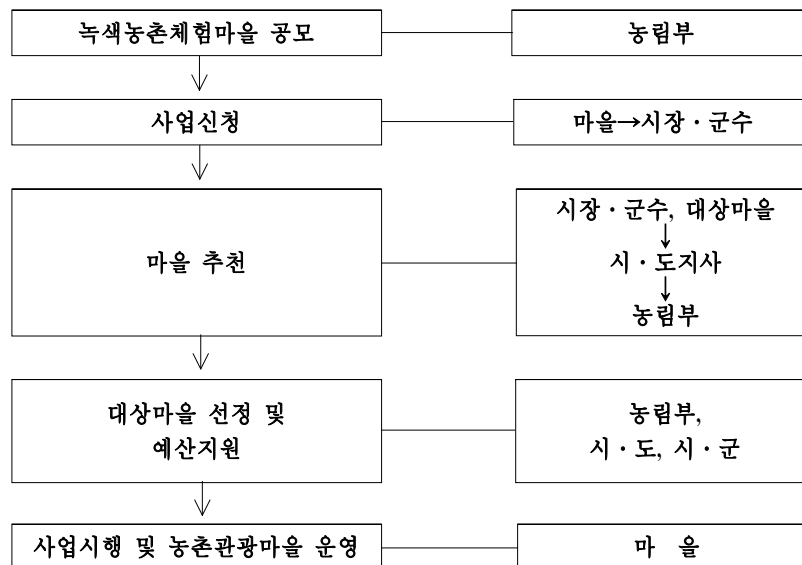
- 총사업비('02~'13) 1,700억원(국고 850, 지방비 850)
 - '03년까지 기 투자액: 88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지원, 컨설팅, 설계비, 교육훈련·홍보비 등

□ 사업 추진 절차

- 공모제



☐ (자체)평가 유무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반기별로 점검

10. 지역특화사업보조사업

☐ 근거법률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농림부
- 사업시행주체: 시·도, 시·군

☐ 사업 목적

-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농정의 활성화 도모

☐ 사업 기간

- 1996년~계속

☐ 공간범위

- 시·도, 시·군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농정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차등지원)

☐ 사업비

- 총사업비('96~) 20,467억원

- '03년까지 기 투자액: 5,167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의 농업특성과 자원·전통문화 등
부존자원 연계 개발

11. 산촌종합개발사업

☐ 근거법률

○ 산림기본법 제29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산림청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사업 목적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주민의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의 진흥

☐ 사업 기간

○ 1994년~2007년

☐ 사업추진기간

○ 2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사전설계계획 수립

☐ 공간범위

- 마을
 - 개발대상 23읍 475면 2,034리
 - 193개 산촌마을 조성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사업비

- 총사업비('98~'07) 1,718억원
 - '03년까지 기투자액: 769억원
- 사전설계비(국비 100%)
- ('05)산촌마을조성 14억원(국고 70%, 지방비 30%)
 - 기존 마을당 12억원에서 상향 조정(마을당 13억/ 보조 12, 융자 1)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임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주거환경개선

12.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근거법률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농어촌정비법 제89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사업 목적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민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 제공

☐ 사업 기간

- 2002년~2007년

☐ 사업추진기간

- 1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기본 설계 수립

☐ 공간범위

- 전국 연안 시·군별 60개소 마을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개소당 5억원

☐ 사업비

- 총사업비('02~'07) 162억원
 - '03년까지 기 투자액 48억원
-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어촌계) 5%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어촌체험안내센터(화장실, 교육장, 보관실 등), 마을진입로, 어장진입로, 주차장, 선착장, 가로등, 상하수도, 낚시잔교, 전망대, 문화·휴식공간, 체험어장, 소공원 및 산책로, 대형관광안내판, 호안 조경 및 정비, 야영장
- 실제 집행 사업(기존 집행 실적)
 - 주차장, 마을안길정비, 산책로, 종합안내센터, 다목적광장, 어촌진입로, 진입도로포장, 가로등, 조경식재 및 시설, 수상레저편의실, 해변광장, 먹거리장터, 야영장

13. 어촌종합개발사업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89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주체: 시·도(시·군)

☐ 사업 목적

- 낙후어촌의 생산·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조성 및 소득증대

- 어촌 부존자원의 특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 사업 기간

- 1994년~2006년

☐ 사업추진기간

- 2년
- (종전) 3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기본계획 수립

☐ 공간범위

- 160개 권역(어촌계)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개소당 35억원
- 어촌계별 3억원 정도

☐ 사업비

- 총사업비 2,766억원
- '03년까지 기 투자액 2,067억원
-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 (종전)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생산기반시설: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소득원도로
- 소득원개발: 냉장저온창고, 생산집하시설, 공동창고
- 어촌관광·부업시설 등

14.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 근거법률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 농촌진흥법 제4조1항, 제13조1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농촌진흥청
- 사업시행주체: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목적

- 농촌의 전통지식·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한 테마마을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다운 마을환경 조성

☐ 사업 기간

- 2002년~2008년

☐ 사업추진기간

- 2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컨설팅 형태의 계획

☐ 공간범위

- 마을
 - 157개 테마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자체 계획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개소당 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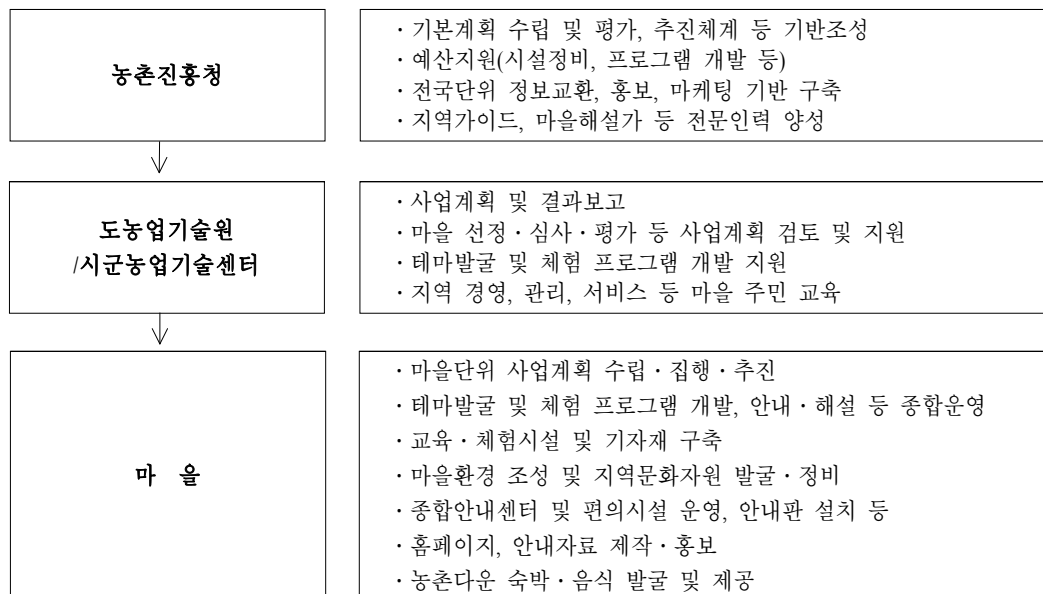
☐ 사업비

- 총사업비('02~'08) 157억원
 - '03년 까지 기 투자액 18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체험·학습시설, 숙박 및 편의시설정비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마을전문가 양성), 전문가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캐릭터 개발 등

□ 사업 추진 절차



15.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 근거법률

- 관광기본법 제9조
- 관광진흥법 제46조, 제71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문화관광부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사업 목적

-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색있고 고유한 역사문화 및 관광 레포츠 등의 자원에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 사업 기간

- 1999년~계속

☐ 사업추진기간

- 사업에 따라 다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시·군 기본계획 수립

☐ 공간범위

- 시·군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사업비

- 총사업비 비대상
 - '03년까지 기 투자액 745억원
- 사업비는 사업에 따라 다름. 정률지원(국고 50%)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공공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화장실 등
- 실제 집행 사업(기존 집행 실적)
 - 하수도정비, 습지, 수생식물원, 영상체험관, 상하수도, 선사문화전시관 건립, 담수용 연못, 친수공간, 오토캠핑, 캐빈하우스

□ 사업 추진 절차



16. 新 『활력지역』 사업

□ 근거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
 -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을 낙후지역으로 규정

□ 주관부처 및 사업시행부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자부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및 지역혁신협의회

□ 사업 목적

-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을 자생적인 발전 동력을 찾아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

□ 사업추진기간

- 3년

□ (사전)계획수립 여부

- 지역발전계획 수립
 -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수립(상향식)

□ 공간범위

- 70개 시·군·구
 - 전국 234개 시·군·구를 종합평가하여 하위 30% 이내 기초지자체 70개를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
 - 평균 1년에 30억씩 3년간, 재 평가후 최대 3번 지원 가능, 즉 최대 9년 동안 270억원 지원
 -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낙후도 기준 하위 20% 해당 지자체: 30억원
 - 낙후도 기준 하위 21~30% 해당 지자체: 20억원

□ 사업비

- 매년 총사업비 2,000억원 내외
 - 1개 시·군당 약 3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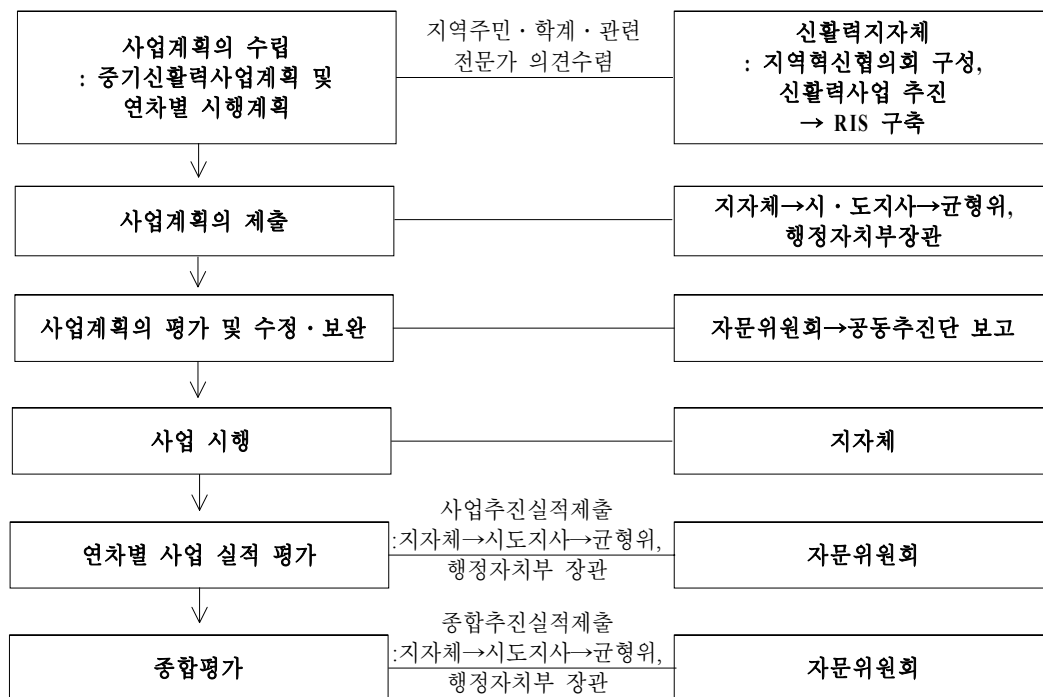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규정상 사업 항목
 -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주체들의 육성

-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신활력사업 계획 및 관리
-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
- 지역특화사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 農都상생을 위한 5都2村 사업 및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 신기술, 신인력, 신기업가 육성
-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
-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개발
-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 홍보·마케팅 강화
-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 사업 추진 절차

○ RIS구축 → 지역발전계획 수립 → 사업시행 → 평가



□ (자체)평가 유무

- 연차별 사업 실적 및 3년 단위 사업이 종료된 후 실적을 자문위원회에서 평가
→ 종합평가 결과를 차회연도 사업평가에 반영

<Abstract>

Consolidation and Streamlining of Rur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gress of those rur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that belong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m against a number of carefully designed criteria, and finally, to suggest an alternative that will lead to the systematic reorganization and streamlining of various rur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The *raison d'être* of these programs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This requires planners and policy-makers to work on a number of key factors in an effective manner. However, most of the programs in effect are principally targeted at the physical aspect, that is, designed only for the improvement and provision of physical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ignoring other aspects. Even worse, programs and projects of similar and overlapping, if not same, goals and contents are competitively pushed forward by various ministries, subsequently causing inefficiencies and wastes. In addition, only for the reason of convenience, policy-makers divide up areas and regions, without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rural settlement networks and hierarchies, for the spatial designation of these programs and projects, thus causing irrelevance and insignificance. Topping all these problems, newly created program of the so-called “New Dynamic Region” is not distinctive enough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ose programs and projects already existing, therefore revealing its dubious image of duplicating their goals and contents.

Rur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can be consolidated and streamlined systematically under the principle that emphasizes, first, local autonomy and creative and entrepreneurial spirit, and secondly, proper role assignments among various, and sometimes competing, ministries, considering the relevance to rural conditions. For this, first, the separation of “Myon”

administrative units of isolated areas and settlement areas must be nullified; second, programs and projects targeted at individual villages must be reevaluated, combined and consolidated; third, distinctive program contents must be secured for the “New Dynamic Region” program so that it can be clearly differentiated in its goals and contents from other rur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and finally, all the programs and projects must be reconsidered and reevaluated carefully whether to include in, or exclude from,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so that only those programs and projects relevant in their goals and contents to the account will remain.

Researchers: Song, Mi-Ryung(mrsong@krei.re.kr)
and Park, Ju-Young

정책연구보고 P70 / 2004. 9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등 록 제5-10호(1979. 5. 25)

인 쇄 2004년 9월

발행 2004년 9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E-mail : Dongyp@chollian.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